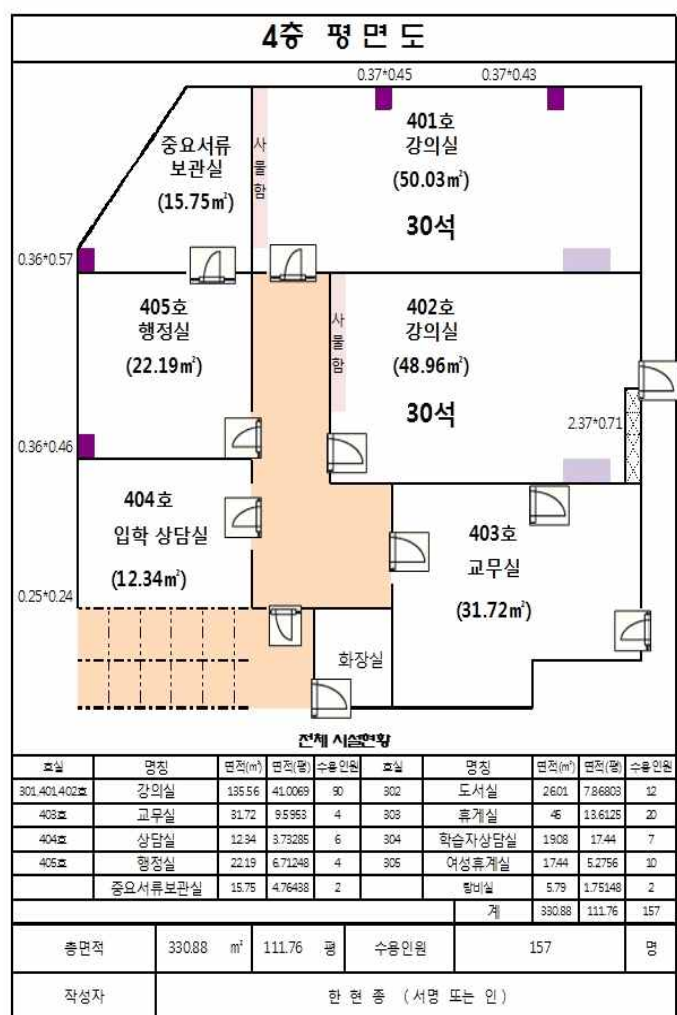


가.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기준연도	시설구분	실수	총 확보 면적(㎡)	비고
2016년 9월 기준	강의실	3	135.56㎡	90명
	교무실	1	31.72㎡	4명
	행정실	1	22.19㎡	4명
	학습자 상담실	1	19.08㎡	6명
	상담실	1	12.34㎡	7명
	도서실(자료실)	1	26.01㎡	12명
	휴게실	2	45.00㎡	20명
	여성휴게실	1	17.44㎡	10명
	중요서류보관실	1	15.75㎡	2명
	탕비실	1	5.79㎡	3명



강의실		
301호	401호	402호
		

교무실 / 행정실		
404호 행정실	403 교무실	중요서류보관실
		

상 담 실

304호 학습자 상담실



404호 입학상담실



도 서 실 / 휴 계 실

302호 도서실



303호 만나실



306호 휴계실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도	학습과목명	이론/실습	학점	이수기간	학급수	급당정원	총정원	유효 시작일	유효 종료일	비고
2015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발달심리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부부상담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사회복지발달사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사회복지정책론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사회복지조사론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사회복지행정론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사회심리학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상담이론과실제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심리학개론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아동상담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이상심리학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인관계관계론	3/0	3	15	1	30	30	2015년3월01일	2018년02월28일	
	결혼과가족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2016	교리사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교정복지론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그리스어기초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단기상담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사회문제론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사회복지법제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사회복지지도감독론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사회복지현장실습	1/4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성격심리학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아동복지론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이스라엘역사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장애인복지론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중독상담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진로상담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특수아상담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학교심리학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히브리어기초	3/0	3	15	1	30	30	2016년3월01일	2010년02월29일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 일정

연도	학습 과목명	이수기간	개설예정시기	학습자모집 예정시기
2016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발달심리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심리학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아동상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개인상담의과정과 실제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상담이론과 실제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히브리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이스라엘역사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아동복지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지도감독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정신건강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정책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법제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조사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발달사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행정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문제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장애인복지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특수아상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심리학개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중독상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이상심리학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진로상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단기상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부부상담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인간관계론	15	2016년 9월 5일	상시모집
	사회복지현장실습	15	2016년 10월 15일	상시모집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도	운영 시기	학습과목명	개설 학급수	학습자수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	여	24	25~29	30대	40대	50	
2016	3 ~6월	결혼과가족	1	19	5	14	1	2	3	4	9	
		아동상담	1	17	5	12	1	2	3	2	9	
		그리스어기초	1	11	6	5	0	1	3	2	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1	16	4	12	0	1	2	3	10	
		교정복지론	1	13	4	9	0	1	2	2	8	
		교리사	1	10	4	6	0	1	3	1	5	
		학교심리학	1	11	3	8	1	1	1	2	6	
		심리학개론	1	10	5	5	1	1	2	1	5	
		사회복지정책론	1	16	1	15	0	1	0	4	11	
		사회복지조사론	1	14	1	13	0	1	0	2	11	
		사회복지행정론	1	11	1	10	0	1	0	2	8	
		사회복지현장실습	1	17	7	10	0	2	3	5	7	
합계				165	46	119	4	15	22	30	94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운영시기	전체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확보율(%)
2016		9	4	5	40%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기준연도	운영시기	총 개설 강의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2016	상반기	36	15	42%	21	58%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단위 : 천원)

기준연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지급인원 비율(%)
2015	35	4	18	22%
	35	4	18	22%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단위 : 천원)

	학습과목명	이론/실습	학점	이수기간	학습비	비고
2015	실제	3/0	3	15	180	
	부부상담	3/0	3	15	180	
	개인상담의과정과실제	3/0	3	15	180	
	사회복지발달사	3/0	3	15	180	
	사회복지정책론	3/0	3	15	180	
	사회복지행정론	3/0	3	15	180	
	사회복지조사론	3/0	3	15	180	
	정신건강론	3/0	3	15	180	
	인관관계론	3/0	3	15	180	
	이상심리학	3/0	3	15	180	
	발달심리	3/0	3	15	180	
	심리학개론	3/0	3	15	180	

나. 예산 및 결산

〈예산서〉

(단위 : 천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운영수입	수강료수입			운영지출	인건비		
	전입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기타수입				교육외비용		
					전출금		
자산및부채수입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계				합 계			

〈결산서〉

수입구분		본예산	결산	차액	지출구분		본예산	결산	차액
영수입	수강료수입		74,281		운영지출	인건비		127,570	
	전입금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					연구학생경비			
	기타수입		133,502			교육외비용			
						전출금			
자산및부채수입					자산및부채지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계			207,783		합 계				

다. 장학금 지급 현황 (2015.1.1. ~ 2015. 12.31)[illegible]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없음)

	학습과목	위반사항	행정처분	조치결과
2016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가. 직원 수

기준연도	직원 수			평생교육사	평균근속연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2016	4	0	4	2	3.6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수강료 총액	학습비 반환 학습자수					반환금액	반환 비율
		합계	과오납	군입대	학습포기	기타		
2015	21,340				1		360	1.6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6조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5.9.25.] [시행일 : 2016.9.28.]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개정 시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현황	연 1회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 1회	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연 1회	2월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3월, 9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3월, 9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연 1회	3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3월, 9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3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연 1회	2월
	나. 예산 및 결산	연 1회	(예산)6월 (결산)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	연 1회	8월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시 마다	조치 시 마다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9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연 1회	9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9월

비고: “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1. 별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별점표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 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교수 또는 강사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	1	2	3
평가인정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	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10	20	30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반	10	20	30
		3) 학습과정의 내용 위반	10	20	3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5	10	15
		2) 과대 또는 거짓광고	5	10	15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5	10	15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교수 또는 강사별)	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1	2	3
		2) 출석관리 부적정	1	2	3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1	2	3
정보 공시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불이행	5	10	15

나. 적용기준

- 1) 별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별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별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2. 별점별 행정처분 기준

1호에 따라 산출된 별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별점 구분	30점 이상	36점 이상	41점 이상	46점 이상	51점 이상	56점 이상	61점 이상	66점 이상
-------	--------	--------	--------	--------	--------	--------	--------	--------

		35점 이하	40점 이하	45점 이하	50점 이하	55점 이하	60점 이하	65점 이하	
행정 처분	평가 인정 신청 제한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3년	3년
	학습과정 운영정지	-	6월	6월	1년	1년	1년 6월	2년	-
	평가인정 취소	-	-	-	-	-	-	-	평가인정 취소

비고

1. 시작된 학습과정에 대한 운영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운영정지의 기산일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 인정 신청 제한은 합산 별점이 가장 큰 학습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영 정지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하고, 평가인정 취소를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년간 평가 인정 신청을 제한한다.